

	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위원회 규정	제정일	2020. 5. 1
		개정일	
		개정차수	차
		담당부서	혁신지원단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혁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과와 그와 부수된 제반사항들을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‘성과관리위원회’라 한다)의 운영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구성) ① 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성과관리위원회는 혁신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교직원 중에서 혁신지원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 3조 (기능)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.

1. 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
2. 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
3. 혁신지원사업의 환류사항
4. 기타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

제 4조 (회의) ① 성과관리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5조 (회의록) 성과관리위원회의에서 관리 및 자문,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며,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